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저자 김도균, 유보배

(Authors)

출처 이슈&진단 (221), 2016.02, 1-25(25 pages)

(Source) <u>Issue&Analysis</u> (221), 2016.02, 1-25(25 pages)

발행처 경기연구원

(Publishe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60870

APA Style 김도균, 유보배 (2016).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슈&진단(221), 1-25

이용정보 이화여자대학교 (Accessed) 203.255.***.68

2020/01/27 13:4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작성 김도균 / 공존사회연구실 연구위원 (dkkim@gri,kr, 031-250-3121)
유보배/ 공존사회연구실 연구원

목 차

쟁점과 대안

- Ⅰ. 노키즈존 확산
- Ⅱ. 노키즈존 관련 쟁점
- Ⅲ. 시사점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슈&진단」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오늘날 가족이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은 도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시적 삶과 사회적 교류가 쇠퇴한 결과 도시공동체가 제공하던 기능들을 가족이 대신 짊어져야 하다 보니 가족이 기능부전에 빠진 것이다."

> - Philippe Ariès (1977) -"The Family and the City" *Daedalus*, Vol.106, No.2

쟁점과 대안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노키즈 존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의 소란스런 행동과 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행동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원인이지만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주 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도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등 어린 아이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다. 노키즈존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대표적인 쟁점과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의 자유이자 고유한 기본권에 해당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키즈 존은 영업상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자 아동차별인가 하는 문제이다. 설문 조사에서는 노키즈존을 기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만 과잉조치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객의 행복추구권과 아이의 기본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하는 문제이다. 법적으로는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설문조사에서는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아이의 기본권보다 우선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육아 스트레스가 공공장소에서 경우 없는 행동의 원인이라면 자녀를 둔 엄마들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하는 문제이다. 설문조사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방치하는 행동은 잘못이지만 이러한 행동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는 응답이 육아 스트레스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설문결과 경기도민 대다수는 카페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어린이 고객들로 인한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노키즈존 매장을 이용할 의향은 강하지 않은 반면, 특정 행위는 규제하면서도 아이를 배려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경기도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캠페인과 인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육아인프라를 확충하고 육아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Ⅰ. 노키즈존 확산

특정 장소에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확산 추세

- □ 아이를 동반한 고객을 받지 않겠다고 표방하는 카페나 음식점 증가
 -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특정 행동이나 소음을 막기 위한 조치로 확산
 - 강남이나 홍대 등 상업지구의 카페나 음식점에서 시작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
 - 경기도의 경우 최근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등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노키즈존 시행 매장 1>

지막 주문은 10시 30분까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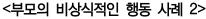
유아 및 아동 동반 입장 제한합니다



자료 :google image(https://www.google.co.kr).

- O 아이의 소란스런 행동과 부모의 방관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원인
 - 카페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거나 뛰어노는 아이들, 이를 방치하는 부모들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
 - 최근에는 카페나 음식점 내에서 기저귀를 갈고 그대로 두고 간다던지, 컵으로 아이의 소변을 받는 등 일부 부모의 경우 없는 행동이 논란 야기

<부모의 비상식적인 행동 사례 1>







天园: google image(https://www.google.co.kr).

- □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도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이유
 - 2011년 부산시내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혀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건 발생
 -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종업원의 부주의와 식당 주인의 직원 안전 교육 미흡을 이유로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2012년 강원도 춘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찌개를 운반하던 중 유모차에 탄 아기에게 국물을 쏟아 아기 허벅지에 화상을 입히는 사건 발생
 -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은 식당의 책임을 70%, 부모의 책임을 30%로 판결
 - 사고발생시 마다 업주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노키즈존 도입을 고려하는 영업점이 증가하는 추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이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뜨거운 음식을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여 손님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하고, 특히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경로에 유아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그 주의를 보다 더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함에 따라 이사건 사고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을'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은 피고 '을'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 : 사건번호(2014가단44161).

자료: 의정부지방법원(uijeongbu.scourt.go.kr).

노키즈존은 다른 나라에서도 확산 추세

□ 영국에서는 어린이의 펍(Pub) 출입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

- 영국은 1995년에 부모가 아이를 동반할 경우 아이도 펍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법률 개정 전에는 만 14세 미만은 펍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음
- 법률 개정 후 '부모를 동반한 어린이의 펍 출입'이 논란이 되면서 BBC는 2010년 시청자 토론방 개설
 - "소란스럽고 우는 아이들 때문에 분위기를 즐길 수 없다" 또는 "펍은 어른들의 전유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 미국에서는 노키즈존이 민권법(Civil Rights Act)과 충돌하는지가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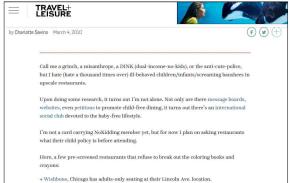
- 미국에서도 어린아이를 동반한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레스토랑 증가 추세
- 하지만 어린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는 민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 제기
 - 미국 민권법은 인종이나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 볼 때 노키즈존도 위법하다는 주장

□ 노키즈존 정보를 알려주는 여행 사이트나 항공사도 등장

- 여행 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어린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증가
 - 영국의 여행 사이트 'Leavethembehind.com'은 아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여행 정보 제공
 - 여행정보제공 블로그 'Travel and Leisures'는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레스토랑 리스트 제공

<노키즈존 정보제공 사이트 1> Go to website > Leavethembehind.com Leavethembehind is ranked 445,776 in the United Kingdom. 'Child free holidays and No children holidays Leavethembehind

<노키즈존 정보제공 사이트 2>



자료 : Travelandleisure.com.

- 자료: Leavethembehind.com3.
- 어린이와 일반 고객의 탑승 공간을 구분하는 항공사도 확산 추세
 - 2012년 말레이시아 항공은 12세 이하의 아이와 동승자는 항공기 아래층 지정구역에만 착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입
 - 에어아시아 엑스는 항공기 내에 '콰이엇 존(quiet zone)'을 설치하고 있으며, 스쿠트 항공은 2013년부터 아이들을 위한 전용좌석제 실시
- 영국예약사이트 '레이트딜'에서 비행이용승객 1,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응답자의 70%가 비행기내 노키즈존 도입을 찬성하였으며, 그 중 35%는 노키즈존에 앉기 위해 추가요금도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

<에어아시아의 '콰이엇 존'>

<비행 중 싫어하는 행동: 앞좌석 발차기>



자료: AirAsia사이트(http://www.airasia.com/kr/ ko/home.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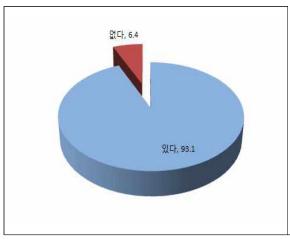


자료: google image(https://www.googl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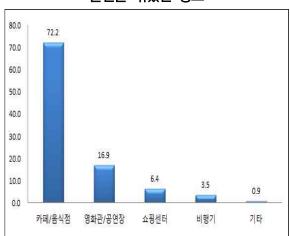
경기도민 대다수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해 불편 경험

- □ 본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때문에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
 - 설문 결과 응답자의 93.1%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런 아이들이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
 - 성별, 연령별, 자녀유무 등에 상관없이 응답자 대부분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
 -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던 장소로는 카페나 음식점이 72.2%(672명)으로 가장 많음
 - 카페나 음식점 등에 이어 두 번째 영화관/공연장(16.9%), 세 번째 쇼핑센터(6.4%), 네 번째 비행기(3.5%) 순으로 나타남

<불편했던 경험 유무>



<불편을 겪었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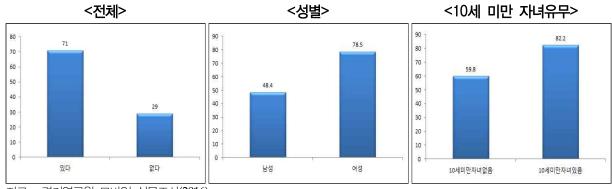


자료: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2016).

¹⁾ 본원은 노키즈존과 관련하여 경기도민의 견해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모바일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오픈서 베이(open survey)에 의뢰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1일-2일 이틀간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3.10%이다.

□ 노키즈존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도 대다수

- 노키즈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로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보다는 적지만 상당히 높은 편
 - 성별로는 여성의 78.5%, 남성의 48.4%가 노키즈존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유무별로는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82.2%, 만 10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59.8%가 노키즈존을 알고 있다고 응답



자료 :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2016).

- 몇몇 설문조사 결과 자녀를 둔 엄마를 포함 대부분의 시민들은 노키즈존에 대해 찬성 의견 표명
 - 2014년 9월, 엄마들이 회원인 육아카페 '맘스홀릭베이비'에서 회원 3,525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 찬반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찬성이 72.7%로 압도적
 - 2015년 9월, JTBC '뉴스룸'에서 길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키즈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도 찬성이 63%로 우세
- '알바몬'에서 아르바이트생 1,084명에게 '근무 중인 매장이 노키즈존으로 변경된다면 찬성할 것이냐'고 물은 결과 찬성의견이 65.5%에 달함
 - 근무 도중 '유아 또는 유아를 동반한 고객으로 인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이 67.7%로, 유아 고객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가 노키즈존 찬성의 주된 이유

Ⅱ. 노키즈존 관련 쟁점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의 자유에 해당하는가?

- □ 어린이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영업방침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겪해
 - 대한민국 헌법 제 15조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업주의 영업방침은 업주의 고유한 기본권에 해당
 - 게다가 영업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은 업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영업방침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
 - 택시와 같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인정되지만 카페나 음식점은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해당
 - 가령, 택시 서비스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소비자의 선택도 제한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
 - 반면, 카페나 음식점은 공익성이 인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
- □ 노키즈존은 일반불공정 거래의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례
 - 일부 전문가들은 노키즈존이 일반불공정 거래의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다고 주장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노키즈존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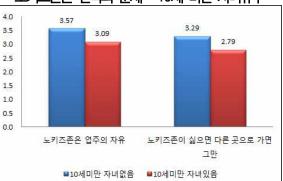
- 하지만 노키즈존은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보다 일반적
 - 공정거래법은 일반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므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사항 없음

□ 경기도민들도 노키즈존은 영업상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우세

- 설문 결과 노키즈존의 도입은 영업상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우세
 -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의 자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견해가 44.4%, 그저 그렇다는 견해가 32.8%,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22.8%로 조사됨
 - 만 10세 미만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 노키즈존은 업주의 자유라는 견해가 3.57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는 3.09에 불과
- 반면, '노키즈존이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
 -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견해가 36.5%,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34.4%로 별 차이가 없음
 - 단, 만 10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노키즈존이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견해가 3.29로 높은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는 2.79에 불과







주 : 5점에 가까울수록 그렇다, 1점에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다를 의미.

자료: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2016).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아동차별인가?

- □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자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견해
 - 일반적으로 출입제한이나 규제는 특정한 사물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 가령 흡연이 문제가 될 경우 흡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
 - 반면, 노키즈존은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 전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사전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 발생
 - 노키즈존은 구체적인 행위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전체를 통제와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
 - 아이를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유해한 사물이나 동물과 같은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도 문제
 - 픽토그램(pictogram)이 보여주는 것처럼, 노키즈존은 아이를 담배나 애완견 등과 등치시킨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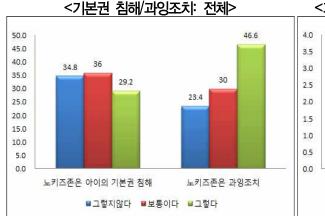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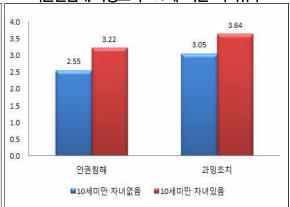
자료: google image(https://www.google.co.kr).

□ 아이의 출입 제한이 정당화되는 장소는 사회적 규범상 필요하다고 가주되는 곳에 하정

-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당한 이유 필요
 -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의 환경적 특성이나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를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기 때문
- 식당이나 카페는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할 만큼 사회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없음
 - 입장 제한 연령 기준이 미취학 아동, 만5세, 만10세 등 매장마다 매우 자의적이라는 것도 문제
- □ 경기도민들은 노키즈존을 아이의 기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만 과잉 조치에 해당한다고 평가
 - 설문 결과 노키즈존은 아이의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
 - '노키즈존은 아이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견해가 29.2%, 그저 그렇다는 견해가 36%,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34.8%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
 - 만 10세 미만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 노키즈존은 아이의 기본권 침해라는 견해가 2.55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는 3.22로 인식차 존재
 - 반면, '노키즈존은 과잉조치에 해당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잉조치라는 격해가 우세
 - 노키즈존은 과잉조치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46.6%로 절반에 달하는 반면, 그렇지 않다는 견해는 23.4%에 불과
 - 만 10세 미만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 노키즈존은 과잉조치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3.05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는 3.64로 인식차 존재



<기본권침해/과잉조치: 10세 미만 자녀유무>



주 : 5점에 가까울수록 그렇다, 1점에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다를 의미.

자료: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2016).

고객의 행복추구권과 아이의 기본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 □ 소란스런 아이나 이를 방치하는 부모는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
 -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
 - 가령, 금연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였을 때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을 상위 기본권으로 인정
 - 노키즈존이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도 불분명
 - 노키즈존은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아이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 하지만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과 업주의 기본권, 일반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충돌하는 사례로 누구의 권리가 상위 개념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
- □ 경기도민들도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아이의 기본권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

- 응답자의 63.5%가 '고객으로서 소란스런 아이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7%에 불과
- 아이의 기본권보다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고 보는 견해는 51.4%인 반면, 아이의 기본권이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는 15.7%에 불과
 - 하지만 고객의 행복추구권과 아이의 기본권이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14.4%에 달함

<아이의 기본권 vs 고객의 행복추구권>								
 ¬ ⊢		노키즈존은	충나게					
구 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합계				
	그렇지 않다	26.0		15.7	6.7			
고객으로서 행복추구권이 있다	보통이다		15.9		29.8			
	그렇다	51.4		14.4	63.5			

자료: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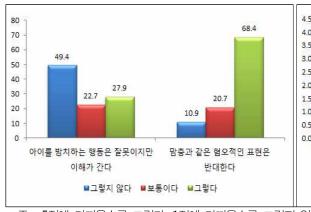
육아에 시달리는 엄마들을 비난만 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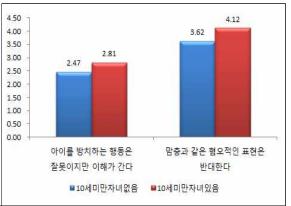
- □ 일부 경우 없는 행동을 하는 엄마들이 비난의 대상인 가운데 엄마라는 집단 전체를 비난하는 것에는 대다수가 반대
 - 기저귀 사건 등이 논란이 되면서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엄마들이 공공의 적으로 등장
 - 설문 결과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는 49.4%인 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는 27.9%에 불과
 - 만 10세 미만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아이를 방치하는 등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
 - '맘충'(mom-蟲)과 같이 비상식적 행동을 한 일부 엄마들을 일반화해서 여성 또는 엄마라는 집단 전체를 비난하는 표현에는 대다수가 반대

- '맘충'(mom-蟲)이란 엄마를 뜻하는 맘(mom)에 '벌레 충(蟲)'자를 붙인 것으로 모성을 혐오하는 표현
- 설문결과 응답자의 68.7%가 맘충과 같은 혐오적인 표현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만 10세 미만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음

<잘못된 행동/여성혐오: 전체>

<잘못된 행동/여성혐오: 10세 미만 자녀유무>





주 : 5점에 가까울수록 그렇다, 1점에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다를 의미.

자료: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2016).

□ 육아 스트레스가 공공장소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

- '슈퍼맘(super-mom)'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엄마들의 육아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추세
 -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거나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6.4%와 50.4%로 절반에 육박
 - '엄마가 만능이길 바라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60.2%에 달하고 있음





주 : 5점에 가까울수록 그렇다, 1점에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다를 의미.

자료: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2016).

- 자녀가 있는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육아 스트레스가 클수록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증가
 -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거나 '피곤할 때 아이가 보채면 귀찮다'고 응답한 경우 '부모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증가(상관계수가 각각 0.21과 0.12)
 -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부모의 비상식적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18.8%)보다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20.2%)가 높게 나옴

<육아 스트레스와 노키즈존에 대한 견해 사이의 상관관계>

구 분	아이로부터 도망치고싶다	아이가 보채면 귀찮다		
노키즈존 이동차별	-0.11*	-0.09*		
고객의 권리 우선	0.10*	0.11*		
업주의 영업상 자유	0.07	0.09*		
아동출입 과잉조치	-0.11*	-0.09*		
전체가 아닌 특정행위 문제	-0.05	-0.01		
육아 어려워질것	-0.05	-0.01		
노키즈존 이외의 장소 이용가능	0.05	0.08		
카페 등에 놀이용품비치	0.06	0.12*		
맘충표현 반대	0.04	0.08		
부모행동 이해가능	0.21*	0.12*		
노키즈존 0용의향 있음	0.10*	0.06		
공공장소 갈등 증가	0.15*	0.13*		

T = T		717101701		설문조사(2016).
\ ⊦⊏	•	71 /104-4-21	THE.	스무스 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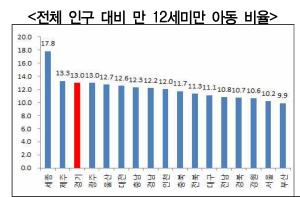
구분	<u> </u>	부모의 잘못된 행동 이해가능				
1	<u>-</u>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14.2%	4.2%	5.6%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보통이다	11.8%	9.4%	8.4%		
	그렇다	18.8%	7.4%	20.2%		

Ⅲ. 시사점

경기도는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만 12세 미만 아동수는 경기도가 전국 최고

- 전체 인구 대비 만 12세 미만 아동 비율은 세종시, 제주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지만, 만 12세 미만 아동수는 160만 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인구수가 경기도와 맞먹는 서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아동수는 100만 명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수 대비 비율도 10.2%에 불과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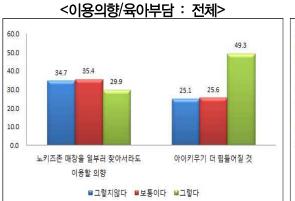
□ 경기도는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만 12세 미만 아동수가 전국 최고라는 것은 그만큼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한 충돌과 갈등 발생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
-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다수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어린이 고객들로 인한 갈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어린이 고객으로 인한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9%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에 불과

노키즈존은 영업상의 자유이지만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은 해결책

- □ 노키즈존은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선택하는 것으로 업주의 자율 선택의 문제
 - 노키즈존을 도입한 가게 주인들 대부분은 아이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 노키즈존이 대부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도 노키즈존의 불가피성을 뒷받침
 - 노키즈존은 일반 고객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불가피성 인정됨
 - 노키즈존은 기본권 침해이자 아동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일반 고객의 행복추구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음
- □ 노키즈존은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은 조치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책
 - 노키즈존이 영업상의 자유일 수는 있으나 노키즈존 매장을 일부러 찾아 가서라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9%에 불과
 - 경기도민 대다수가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어린이 고객으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키즈존 매장을 이용할 의사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단, 만 10세 미만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용 의향이 2.51인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 3.34로 상당한 차이 존재
 - 노키즈존이 확산되면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49.3%로 절반에 육박
 - 만 10세 미만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3.7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출산률 저하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키즈존은 출산장려정책에 반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음



<이용의향/육아부담: 10세 미만 자녀유무> 3.34 3.5 2 94 3.0 2.51 2.0 0.5 노키즈존 매장을 일부러 찾아서라도 아이키우기 더 힘들어질 것 이용할 의향 ■10세미만 자녀없음 ■10세미만 자녀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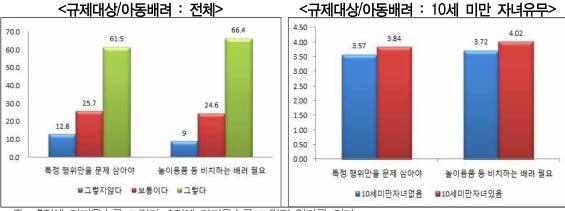
주 : 5점에 가까울수록 그렇다, 1점에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다를 의미.

자료: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2016).

아이라는 집단 전체가 아니라 아이의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아야

- □ 특정 행위는 규제하면서도 아이를 배려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노키즈존보다 우선적으로 필요
 - 아동집단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는 노력 필요
 - 설문결과 아동집단 전체가 아니라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격해가 61.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령 '뛰는 행동 금지', '소란 금지' 등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를 통제하고, 관련 픽토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 있음
 -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놀이용품을 비치해 두는 배려도 필요
 - 아이들의 행동을 무작정 통제하기 보다는 아이들을 특정한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치들 필요

- 응답자의 66.4%가 색연필이나 종이접기, 그림책 등 놀이용품을 비치해 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



주 : 5점에 가까울수록 그렇다, 1점에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다를 의미.

자료: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2016).

- □ 노키즈존이 불가피한 경우 '아이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있음
 - 안전사고 예방 차워에서 노키즈존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 필요
 - 아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노키즈존 논란 과정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있음
 - 안전사고 예방 차워에서 어린이의 출입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노키즈존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상황과 장소에 따라 어린이의 출입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노력 필요
 - 연령 제한 영화나 공연, 클래식 콘서트 등과 같이 사회적 통념상 아이의 출입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어린이 출입 제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경기도 차원의 인성교육과 육아 네트워크 다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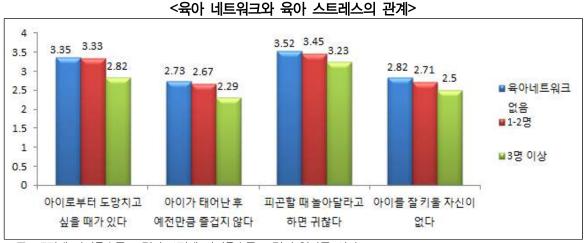
□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캠페인과 인성교육 필요

- O 카페나 음식점이라는 공간에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노력은 부족
 - 캠페인을 통해 공공장소 이용과 예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 필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방안전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듯이 공공장소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
 - 설문 결과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엄마들의 90.6%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에서 공공장소 예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49.8%로 절반에 육박
-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성테마파크를 활용한 체험학습형 인성교육도 중요
 - 공공장소 예절을 지키는 것은 아이와 부모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성테마파크를 통해 아이와 부모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 필요

□ 고립된 육아로부터 탈피하고 육아 네트워크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워 필요

- 출산률 저하로 육아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 스트레스 증가는 오히려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 모성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육아 스트레스를 높이고, 이와 함께 아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초래할 가능성 있음
 -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방치하는 행동이 육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주위에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에 따라 육아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 존재
 - 고립된 육아는 엄마들이 자녀와 거리를 두고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주된 장애물로 작동
 - 주위에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육아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반면, 주위에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3명 이상인 경우 육아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경향 보임



주 : 5점에 가까울수록 그렇다, 1점에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다를 의미.

자료: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2016).

- 고립된 육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육아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
 - 엄마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육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워하는 노력이 필요
 - 또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엄마들이 62.6%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간제 보육반을 늘려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 필요

<노키즈존 주요 문항 빈도표>

설문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i>그</i> 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 침해이자 아동차별이다	133	215	360	219	73	1,000
고객으로서 소란스런 아이들로부터 방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	56	298	391	244	1,000
노키즈존을 정하는 것은 업주의 영업상 자유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60	168	328	274	170	1,000
소수의 아이들과 부모들 때문에 전체 아동집단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조치다	71	163	300	284	182	1,000
아동집단 전체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	32	96	257	364	251	1,000
노키즈존이 확산되면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99	152	256	289	204	1,000
노키즈존이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115	229	291	231	134	1,000
카페나 음식점 등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용품을 비치해두는 배려가 필요하다	28	62	246	341	323	1,000
개념 없는 부모들의 행동은 비난받을 만하지만 맘충과 같은 혐오적인 표현에는 반대한다	36	73	207	356	328	1,000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	211	283	227	213	66	1,000
노키즈존을 표방한 카페나 음식점이 있다면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	152	195	354	176	123	1,000
공공장소에서 어린이 고객들로 인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3	35	272	455	235	1,000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0	13	128	253	106	500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0	3	59	228	210	500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49	71	148	155	77	500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86	130	181	81	22	50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14	49	185	204	48	500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74	130	183	89	24	500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79	112	137	138	34	500
엄마가 만능이길 바라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23	46	130	185	116	50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공공장소 예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	1	3	43	204	249	500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	20	37	113	161	124	455

<배경변수>

78	성별		나이			학력		자녀유무			
/ 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고등학교이하	대학교이상	자녀없음	10세미만 자녀	10세이상 자녀
계(명)	250	750	98	503	184	215	272	728	134	500	366

주 : 모든 구분의 합계는 1,000명.

GRI 경기연구원 Gyaonggi Research Institute